

##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4.29]  
(일부개정) 2022.04.29 조례 제1822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대중교통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)940-5762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운전면허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.
2. "고령운전자"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3. "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"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)** 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교통안전 교육)**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, 한국교통안전공단,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29>
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1.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
2.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
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
<항 신설 2022.4.29>

**제6조(정보제공)**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**부 칙 (2019.12.27 조례 제1558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2. 4. 29. 조례 제1822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